

의안번호	2200563
의 퇴 인	서영교의원
회 답 일	2024. 7. 11.
추 계 번호	24D0967

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13조 3,227억 4,300만원(단년도 추계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년

		(단위: 백만원)
		2024
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		13,322,743

주: 본 추계 결과는 지급대상자 수 및 1인당 지급금액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, 실제 지급대상자 수 및 1인당 지급금액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)	—국가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. 다만,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1항) —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(제2항) 1.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2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3. 「난민법」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자인 ‘국민’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¹⁾와 동일하다고 가정
- 국민 중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(안 제5조제1항 단서)인 ‘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수’는 법무부의 통계와 동일하고, 추계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 - 법무부에 따르면, 2022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자 수는 52,940명²⁾, 2022년 기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수는 798명³⁾임
- 외국인 중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(안 제5조제2항제2호)인 ‘장기체류자격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수’는 법무부 통계와 동일하고, 추계 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
 -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, 2023년 국내체류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격자는 1,881,921명, 영주자격자는 185,441명임⁴⁾

1) 자료: 행정안전부, 2024년 5월 기준

2) 자료: 법무부의 「2023년 교정 통계연보」, 피보호감호자 및 노역장 유치자를 포함한 수치임

3) 자료: 공공데이터포털, 국립법무병원 수용현황

4) 자료: 법무부 홈페이지

□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(안 제5조제2항제1호),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(안 제5조제2항제3호)는 장기체류외국인에 해당하므로, 안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외국인 수에 포함하여 추계함

- 「출입국관리법」⁵⁾에 따르면, 장기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, 결혼이민(F-6), 거주(F-2), 기타(G-1) 비자 등을 포함함⁶⁾
-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결혼한 경우 결혼이민(F-6)비자,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거주(F-2)비자,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기타(G-1)비자를 취득하므로, 장기체류외국인에 포함됨

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 증가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행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별 발행비용 증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에서 제외함

○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,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,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⁷⁾

- 경기도는 경기도지역화폐센터를 두어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사업을 지원⁸⁾하도록 하고 있으며, 세종특별자치시는 상품권 발행, 시스템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⁹⁾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발행방식에 차이가 있음

□ 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2024년 9월 14일까지 국가가 지방자치

5)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(일반체류자격)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(이하 "일반체류자격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단기체류자격: 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(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
2. 장기체류자격: 유학, 연수, 투자, 주재,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

② (생략)

6) 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참고

7)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~④ (생략)

제18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8) 「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(경기도조례 제8006호)

9) 「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78호)

단체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4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지급대상자 수) 추계의 전제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자 수를 추정하면, 총 53,290,971명임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‘국민’의 수는 2024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수(51,277,347명)임
 - 제정안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민 중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자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, 장기체류자격자·영주자격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지급대상자에 포함함
 - － 추계의 전제에 따라 교정시설 52,940명, 치료감호시설 798명(총 53,739명)을 제외하고, 장기체류자격자는 1,881,921명, 영주자격자는 185,441명(총 2,067,362명)을 추가함

[표 2] 제정안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

구 분		주민등록 인구(명)
국민 (A)		51,277,347
국민 중 지급대상자 제외 대상(B)	합 계	53,738
	교정시설	52,940
	치료감호시설	798
외국인 중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(C)	합 계	2,067,362
	장기체류자격자	1,881,921
	영주자격자	185,441
지급대상자 수 (D=A-B+C)		53,290,97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제정안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13조 3,227억 4,300만원임

[표 3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
구 분	1인당 지급금액(A, 천원)	지급대상자 수(B, 천명)	재정소요 (C=A×B, 백만원)
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금액	250	53,291	13,322,743

주: 단수 조정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지급대상자 수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, 실제 지급대상자 수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assembly.go.kr